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6. 9. 8., 법률 제21894호)에 따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공사대금 정보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1. 9.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정보에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이 경우 건설산업정보에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연 락 처	(044) 201 - 3541